[서식 예]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 생생 범위 변경 청구



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

청 구 인 ○○(전화)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사건본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등록기준지(국적)

청 구 취 지

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별지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 ○○법원 20○○느단0000호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○○○가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위 심판에 의하면,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(내용 기재).
- 4.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첨 부 서 류

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)

각 1통

1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

1통

- 1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
- 1.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(1.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)
- 1. 기타(소명자료)

2000.0.0.

위 청구인 ○ ○ ○ (인)



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

□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 없음					
□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					
결정권을 가짐					
1. □ 의료행위의 동의					
2. □ 거주・이전에 관한 결정					
3. □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					
4. □ 우편・통신에 관한 결정					
5. □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					
6. □ 기타 사항					

			or Kr	벌로구조공단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)의 주소지 가정법원			
청구권자	사건본인(피후견인),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족, 성년후견인, 성년후견 감독인,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(민법 938조 제4항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38조, 가사소송법 제2조, 제 44조 제1의2호	
비 용	・인지액 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청구인 수×3,700원×10회분			